

첨부

「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」

2026년 「구미시 With+판로지원사업」

[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판로 통합 지원 운영 용역]

과업지시서

2026. 04.

1

과업개요

- 과업명 : 「2026년 구미시 With+판로지원사업」
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판로 통합 지원 운영 용역
- 과업목적
 - 구미시에 거주하며,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소비 추세 가속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화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
 -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진출을 위해 ‘준비→실전→도약’의 단계별 지원 제공 및 기반 인프라 지원으로 인한 매출 증대
- 과업대상
 - 구미시에 거주하며, 구미시 소재 소상공인 10개사 정도
- 과업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6. 11. 1.
- 과업내용
 - (소상공인 단계별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)
 - 준비단계 : 사전 진단 및 제품 시장 분석, 컨설팅, 기초교육 등
 - 실전단계 : 제품사진 촬영 및 디자인개선, 상세페이지 제작, 홍보 영상 제작 등
 - 도약단계 :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판매 채널 구축, 라이브커머스 촬영 지원 등
- 입찰방법
 - 업체선정 : 1개사(공동수급 불가)
 - 입찰방식 : 일반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- 용역예산 : 금150,000,000원 정도(부가세 포함)

2

과업내용

□ 과업총괄표

항목	세부내용	비고
Step-1 소상공인 판로지원 (준비단계)	- 사전 진단 및 제품시장 분석, 판로지원 컨설팅 - 기초 통합교육, 상품 및 프로모션 마케팅 기획 등	전문 MD 구성 및 전담
Step-2 소상공인 판로지원 (실전단계)	- 제품사진 촬영 및 디자인개선, 상세페이지 제작(AI활용 한 콘텐츠 소상공인 지원 및 교육, 온라인 판매 최적 화), 홍보 영상(숏폼 등)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	
Step-3 소상공인 판로지원 (도약단계)	- 온라인 플랫폼(네이버,쿠팡 등) 입점 및 판매 채널 구축 - 라이브커머스 촬영 및 판매지원 - 로컬상품관 입점 연계 및 소상공인 상품 홍보 등	
운영관리 및 사업보고 (결과보고)	- 과업 수행결과 관리 및 보고, 사후지원 등	

□ 온라인 플랫폼 판로 통합 지원 (단계별)

○ 과업예산 : 금 150백만원 (금 일억오천만원) ※ 10개사 정도

○ 전문조직 구성 :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최소 인원 구축 (5명 이상 권고)

담당 업무		인력	업 무	비 고
필수	총괄운영자	1명	총괄 운영	
	운영진, 컨설턴트, 웹디자이너 등	3명	사전조사 및 분석, 컨설팅, 콘텐츠 제작, 입점, 판매지원 등	전문 MD 구성 및 전담
회계, CS센터업무		1명	정산업무, 참여기업 CS, 사후관리 등	
기타		0명	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	용역사 제시

※ 전문조직 조직도 1부, 참여인원 재직증명서(부서 명시), 경력증명서 각 1부씩 제출

○ 과업개요(요약표)

과업구분	세부내용
① 현지조사 및 컨설팅	수요조사, 경쟁사 식별, 시장동향, 제품분석, 컨설팅 등
▼	
② 제품 및 디자인, 브랜드 개발	제품 개발, 디자인컨셉, 디자인개발, 디자인 출원 등
▼	
③ 콘텐츠 제작	상세페이지 제작(온라인 판매 최적화), 시각화 제품사진 촬영 및 홍보용 영상 촬영, 콘텐츠 제작(시활용) 등
▼	
④ 온라인 플랫폼 입점	온라인 플랫폼 선정 및 입점, 온라인 관리 최적화 등
▼	
⑤ 온라인 판매	기획, 프로모션, 라이브커머스 판매지원, 제품 노출 홍보 등
▼	
⑥ 사업관리	월 단위 진행상황, 실적보고, 정산보고 등

○ 현지조사 및 컨설팅

- 시장 및 수요 조사 : 타겟 고객층의 소비 트렌드, 구매 패턴, 유사 제품군 시장 규모 및 동향 분석
- 경쟁사 및 자사 분석(SWOT) : 주요 경쟁사 식별, 가격 정책, 마케팅 전략 벤치마킹 및 자사 제품의 현수준(경쟁력)진단
- 맞춤형 컨설팅 :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품 개선 방향, 브랜드 포지셔닝, 유통 채널 진입을 위한 종합 전략 수립

○ 제품 및 디자인·브랜드 개발(상품화 및 가치 제고)

- 브랜드 아이덴티티(BI) 기획 : 타겟 소비자에 맞춘 네이밍, 로고, 브랜드 스토리텔링 개발
-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: 온라인 배송에 적합하고 시각적 매력도를 높인 패키지 구조 및 시각 디자인 고도화
- 디자인 출원 : 디자인개발 특허, 출원, 등록 등 권리화 지원

○ 콘텐츠 제작(온라인 세일즈 에셋 구축)

- 상세페이지 기획 및 제작 : 온라인 플랫폼(모바일/PC)환경에 최적화된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, 후킹 카피라이팅, 제품 소구점(USP) 시각화 적용
- 제품 사진 촬영 : 스튜디오 연출컷, 누끼컷(백배경), 실사용(라이프 스타일) 사진 등 고해상도 이미지 확보
- 홍보영 영상 촬영 :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제품 시연 및 숏폼(유튜브 쇼츠, 인스타그램 릴스 등)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바이럴 영상 제작

○ 온라인 플랫폼 입점(판로 개척 및 스토어 세팅)

- 플랫폼 선정 및 입점 대행 : 제품 특성에 맞는 주요 오픈마켓(네이버, 스마트스토어, 쿠팡 등) 및 지역 특화 쇼핑몰(사이소 등)판매 채널 발굴 및 입점 절차 수행
- 온라인 관리 최적화 : 플랫폼별 검색엔진 최적화(SEO), 핵심 키워드 태그 설정, 카테고리 매칭 및 스토어 기본 세팅 (스캔 배너, 프로필 적용)

○ 온라인 판매(매출 활성화 및 타겟 마케팅)

- 프로모션 기획 및 운영 : 입점 초기 리뷰 및 판매량 확보를 위한 기획전, 할인 쿠폰 발행, 체험단 이벤트 등 프로모션 실행
- 라이브 커머스 판매 지원 : 기획, 쇼호스트 섭외, 스튜디오 대관, 방송 송출, 실시간 고객 소통(CS) 등 라이브 방송 전 과정 지원
- 제품 노출 홍보 : 타겟 고객 대상 SNS 스폰서드 광고, 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통한 트래픽 유도 및 구매 전환율 관리

○ 사업관리(성과 모니터링 및 행정 처리)

- 정기 보고 체계 운영 : 과업 착수, 중간, 완료 시점의 공식 보고 및

월 단위 과업 진행 상황 보고(이슈 트래킹 포함)

- 성과 지표(KPI) 관리 : 방문자 수, 전환율, 매출액 등 정량적 성과 데이터 분석 및 실적 보고
- 정산 및 산출물 납품 : 투명한 예산 집행 내역 증빙, 최종 정산 보고서 및 과업 결과물(관로 지원 전반적인 결과물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 내역, 디자인 원본, 상세페이지, 사진/영상 데이터, 기타 발주한 업체의 요청 결과물 등) 일체 제출

□ 운영관리 및 사업보고

○ 일정관리

-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시
-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, 수행사는 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일정 변경 및 확정

○ 투입인력관리

- 수행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, 인력, 구성, 경력사항과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, 투입률을 제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.
-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못하며,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후에 가능함.

○ 인수인계관리

-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발생할 경우,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5일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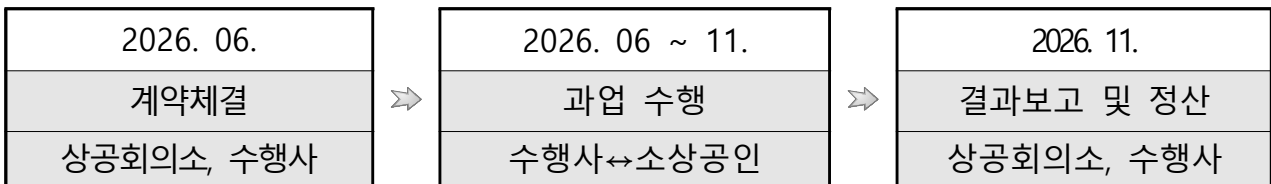
○ 과업보고

- (착수보고)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, 실행계획서 등 포함
- (월별보고) 과업 진행 현황 및 수행 계획 보고
- (중간보고) 사업공정 기간 1/2 수행 후 중간보고 시행, 중간보고서 제출
- (완료보고) 과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,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

산출물 내역 포함

- (최종정산) 사업비의 모든 사용분에 대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 등) 제출 必
- (성공사례) 온라인 플랫폼 판로 개척 지원 성공사례 도출 및 보고
- ※ 이외의 제출물을 상공회의소가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보고 시기는 상호합의 하에 변경 될 수 있음.

□ 추진일정



3 과업지침

○ 사업수행 조건

- 모든 업무는 협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하며,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 등 관련 법규 및 규정,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에 의한다.
- 기획 방향 및 구성 내용, 그 밖의 과업 내용은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 과정에 이를 수용·반영해야 한다.

○ 과업수행원칙

-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와 구미상공회의소(이하 “발주자”라 한다)의 내부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-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동 과업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 범위에 포함 된 것으로 하며,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 과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동 자료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

○ 적용기준
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최신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수행에 활용 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또한 그 자료와 기술을 발주자에 전수하고,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즉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, 양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.
- 본 과업은 각종 관련 법규의 규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○ 참여인력의 교체

-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참여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발주자의 요구로 교체될 시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수행기간

-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하되, 다음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의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
 -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
 -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
 -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과업기간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

○ 주요업무의 사전승인

- 계약상대자는 하기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

수행하여야 한다.

-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변경내용
-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
- 주요과업 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
- 기타 발주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

○ 용역감독의 제반업무

- 발주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하기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·감독할 권한을 지니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참여인력 동원 현황
 - 업무수행 상태
 - 기타 과업수행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
-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.
- 안전관리의 의무
 -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.

○ 보안 및 비밀유지
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을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으며, 보안사항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, 모든 법 적·도의적 책임을 진다.
-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사항 또는 용역과 관련한 사항의 공표 및 발표 시에는 사전 상호협의를 요하며 누설을 금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하였거나 본 용역을 통하여 획득한 각종 자료를 전부 반납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보류할 수 있다.
- 본 과업 수행 상 발생하는 모든 자료의 판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, 계약상대자는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○ 용역대가의 지급

-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없는 한 과업은 각 비목별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.
- 과업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 후 사후 검토에 따라 발주자가 검수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계약상대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가 지급을 청구한다.
-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진도를 확인하여 산출내역서에 의거 대가 지급한다.
 - 계약상대자는 용역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용역 청구서를 제출한다.
 -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상기 용역비를 15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상호 협의한다.
 - 계약금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, 이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계약 금액을 고의로 불성실하게 전용하는 경우, 발주자의 재량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당하게 지급된 용역대가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 -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기간 내에 용역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,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용역대가를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 발주자가 용역대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거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용역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등

-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과업상의 이행 의무 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, 발주자 또한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 없는 본 과업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-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·생산된 자료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며, 계약상대자가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

할 경우에는 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- 계약해지시 기 지불된 대금 및 관련 행정처리는 관련 법률 또는 발주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.

○ 계약의 변경 및 해지

- 용역계약일반조건(계약예규) 제15조, 제16조, 제17조 및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.
 - 발주자에 의하여 용역계약 및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
 -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
 - 계약내용에 따른 예산 변경시
 - 관계기관 협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 -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
 -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 - 과업수행 요청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
 -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 -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 - 부정 및 법률 저촉으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
- 상기 계약 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발주처는 과업수행기업에 대해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,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, 용역사는 이를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○ 지식재산권 침해

-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 산출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 3자로부터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(이하

“지적재산권 등”)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- 계약상대자가 제 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, 계약상대자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당해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거나, ②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산출물을 지적재산권 등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이상의 것으로 대체하거나, ③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본 지적재산권 침해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.
-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.